

-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대에 관한 청원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일자 : 2001년 12월 31일

나. 청 원 자 : 구미시장천면묵어리223 김태준 외 135인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1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1월 29일

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청원설명의 요지

가. 소개의원 : 김응기 의원

나. 청원내용

- 당초 공장부지(장천면 하장리 산52-6번지 일원) 조성시에는 목재, 전자부품, 기계 등 일반공장이 들어설 예정으로서 지역주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다소간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었으나
- 이같은 당초의 사업계획이 백지화 되고 (주)강북산업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인 폐콘크리트를 수집, 파쇄하여 벽돌을 제조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우려하여 청원하였음
 - 사업장과 농지와의 거리가 50~100m 정도
 - 사업장이 묵어리.여남리 주택과 500m내외의 거리에 위치
 - 지하수의 과다사용으로 식수 및 농업용수의 오염과 부족
 - 청정 농산물 생산 불가로 농가소득 감소
 - 분진, 소음, 매연등 대기오염 발생
 - 사업장진입로 입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통안전문제 야기

다. 참고사항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, 폐기물관리법 제2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완 진

- 민원이 야기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는 (주)강북산업이 허가과에서 관련 부서의 승인조건(보전임지 전용, 산림형질 변경, 농지전용 변경)에 저촉이 되지 않아 2001. 12. 3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나
- 별도로 폐기물관리과에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2002. 1. 10까지 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현재 해당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2002. 2. 18 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한 상태로서
- 사업장은 장천면 하장리 산52-6번지의 8필지(50,498㎡)의 산 중턱에 위치하여 마을과는 떨어져 있는 곳임
- 사실, 폐기물관련시설 입주 반대 움직임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날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면서 환경오염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해당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, 청원인의 청원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나
-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은 폐콘크리트를 수집하여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으로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볼 때 일반 폐기물매립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음.
- 하지만, 처리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, 먼지, 매연 등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한 검토하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업장을 해당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,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을 우선 해결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의견서 채택

-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대에 관한 청원 -

의 건 서

1. 처리기관 : 구미시장
2.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산52-6번지 외 8필지 50,498㎡에 시설 계획중인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은 청정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므로, 허가 주체인 구미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토록 의결하였다.

다 음

-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일반 폐기물매립장과는 달리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,
-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요즈음, 소음과 진동, 매연, 먼지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이같은 시설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,
-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고, 생활도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.

2002. 1. 30

구 미 시 의 회 의 원 일 동